



오 장관은 이어 최근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등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간 활어위생약정에 따라 내달부터 양식장등록제가 시행되고 12월에는 등록양식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수입수산물 안전대책과 투포트정책 등에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된 데 대해 “중국 현지에서 우리 검사기관을 설치하거나 정보수집 연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도 “국내의 모든 검역기관이 각자 확보한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국내 검역체계의 대수술을 촉구했다.

투포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호남 의원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의원들은 오 장관이 해외출장중인 지난 9월14일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항만을 키워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장관의 진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개의 항구’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글로벌 물류체계화에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하나로 묶는 체계로 항만을 육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양부 선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고시

적용기간 10월1일부터 2007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는 9월21일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이 고시의 적용기간은 금년 10월1일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이다.

이 고시에 의하면, 선원 최저임금액은 월 805,000원으로 정했으며, 「선원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의 수당 및 보상지급 등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최저액은 월 985,880원(1,577,400원)으로 정했다.

적용의 특례와 관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즉,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 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선원의 경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원양수산업노동조합/한국원양어업협회·한국운반선협회 등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이행사항과 관련해서는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